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3.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3.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성서·신당종합사회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 제 출 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행복나눔과)
- 제출일자: 2023. 03. 03.(금)
- 회부일자: 2023. 03. 03.(금)
- 검토기간: 2023. 03. 03.(금) ~ 2023. 03. 10.(금)

### 2. 제안이유

-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성서·신당종합 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7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면적, m <sup>2</sup> )	현 위탁사항		비고 (개관일)
			위탁기간	법인명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신당로 56 (신당동)	지하1, 지상3층 (연면적 2,590m <sup>2</sup> )	2018.7.29. ~ 2023.7.28.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당로 55 (신당동)	지하1, 지상2층 (연면적 1,247.1m <sup>2</sup> )	2018.7.29. ~ 2023.7.28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	

#### 나. 위탁개요

##### ○ 위탁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 사회복지관 사업(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및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등에 근거한 사무
- 기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추진 등

○ 위탁기간: 5년(2023. 7. 29.~2028. 7. 28.)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4.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9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

## 5.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성서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2018년 7월 29일부터 2023년 7월 28일까지)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 1995년 8월 설립된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성서주공1단지 아파트 내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2,590m<sup>2</sup>로 사회복지법인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사회복지사 5명을 포함해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지역조직화·특화사업·사회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심리·언어 상담센터 및 온누리장난감도서관 등을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1995년 8월 개관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성서주공3단지 아파트 내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1,247.1m<sup>2</sup>로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 현재 무지개꿈땅가족복지센터 언어·심리치료사 7명을 포함해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놀이공간 ‘아우성’과 달서무지개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 같은 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의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위탁절차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서비스제공,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이 재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계법령

###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하 생략>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위탁기간 등) ① 복지관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할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법인유형 및 목적, 법인의 재산, 사회복지 사업 운영실적 등)
2.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3. 재무 구조의 안정성
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5.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②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 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평가 또는 감사결과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